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02. 02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



- 1. 건 명 :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2. 근 거 :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시행지침
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동법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이O민	1987.03.30.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처분	사유발생일(기업사유에 의한 퇴사일)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해지 미신청	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 직권 중도해지 처분	폐문부재	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4.02.02.~2024.02.16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박영애(☎055-330-95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